

『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7월 8일

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
오탈자,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○ 합리적인 사용료 반환

- 구미시의 사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 또는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구할 때 총사용료의 10%를 배상하거나 공제한다는 규정 개정(안 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9조, 제144조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○ 합 의 : 규제개혁T/F팀과 합의됨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오탈자,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제명을 “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”를 “구미 시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”로 변경하고,
- 안 제11조에 구미시 사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 또는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%를 배상하거나 공제한다는 내용을 반영함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사용료의 반환규정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시설 사용 개시 전·후, 귀책사유별 반환 규정 등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